|  |
| --- |
| 학생건강검진기관 계약 관련 서류 간소화방안으로 마련한 ‘학생 건강검진 승낙서’ 에 대한 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작성된 서식(안)으로 학교 필요에 따라 검진기관 계약서류로 활용  하실 수 있습니다. |

|  |
| --- |
| **학생 구강검진 승낙서(예시)** |

DRW000018f013d1**학생 검진기관으로써 아래 계약내용,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등 검진기관**

**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낙합니다. (계약서 작성 생략)**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□ 검진기관 (전화번호: )** | | | |
| 병원명 |  | 사업자등록번호 |  |
| 주 소 |  | 원장성명 | (인) |

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□ 계약내용** | | | | | | |
| 계약건명 | **2024년도 ( ) 학교 학생 구강검진** | | | | | |
| 1인당검진비용 | ( ) 학년 | ( ) 학년 | ( ) 학년 | | | ( ) 학년 |
| 8,120원 | 8,120원 | 8,120원 | | | 8,120원 |
| 검진대상 | ( )학년 학생 명 중 방문학생 | | | | | |
| 검진기간 | 2024년 월 일 ~ 월 일 | | | 검진완료일 | 2024년 월 일 | |
| 계약보증금 | 계약금액(검진대상인원\*검진비용)의 10% | | | | | |
| 지연배상금 | 검진완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매1일마다 청구금액(검진인원\*검진비용)의 1,000분의 2.5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계약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. | | | | | |

|  |
| --- |
| **□ 검진기관의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** |
| **1.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：**검진기관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제2항 관련 [별표2]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한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학생 개인별로 정밀하게 실시한다. |
| **2.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：**검진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[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]에 따라 검진결과를 판정, 기재한다. |
| **3. 검진결과 통보：**검진기관은 건강주의, 질환의심 또는 유소견자의 경우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완료 후 15일 이내에 검진학생에 대하여 학생건강검사(구강검진)결과통보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검진기관이 보관, 1부는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, 1부는 학교로 통보한다. |
| **4. 검진기관 준수사항**  가. 검진기관은 검진실시에 앞서 검진에 필요한 일반검진문진표, 구강검진문진표, 검진안내서 (검진장소, 검진시간, 검진절차 및 검진 시 유의사항 등) 등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배부  나. 검진기관의｢인력․시설 및 장비기준｣을 반드시 충족하고 검진업무 수행  다. 검진기관은 흉부방사선 검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성적서,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사본을 비치하고, 검진장비에 대한 정도관리 철저  라. 무자격자(의사가 아닌 간호사, 치과위생사 등)의 검진행위 금지  마. 검진결과 통보시기 준수  바. 학생의 인적사항, 검진자료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및 검진통계자료 보안관리 철저  사. 건강검진과 관련된 검사소견 및 기록, 방사선촬영필름 및 판독 소견서 등의 검진자료는 5년간  보존(｢의료법 시행규칙｣ 제15조) |
| **5. 사고책임：**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진에 따른 제반 의료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,  검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는 검진기관이 민․형사상 책임을 진다. |
| **6. 기타 비용：**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사에 따른 제비용을 부담하고, 계약금액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를 “갑”에게 요구할 수 없다. |
| **7. 검진비용의 청구․지급：**검진기관은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, 학교는 청구일로부터  7일 이내(토요일, 공휴일 제외)에 지급한다. |
| **8. 손해배상：**검진기관은 상기 계약사항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때 계약보증금을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.  또한, 검진기관이 “갑”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. |
| **9. 검진취소 등：**천재지변 또는 학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학생 건강검진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때에는 학교는 즉시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, 검진기관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 |
| **10. 계약조건：**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, 지방자치 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(행정자치부 예규), ○○학교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한다. (청렴계약특수조건은 학교에서 교부) |
| **11. 계약 시 제출서류：**청렴계약이행서약서, 수의각서(학교에서 서식 제공), 통장사본 |